

# **서초구립 삼호3차아파트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 14호)**

○ 2018. 09. 10.

○ 행정복지위원회  
위 원 장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08. 24. 서초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 08. 31.

**다. 상정일자 :** 2018. 09. 10.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1회 1일)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 서초구립 삼호3차아파트 어린이집(가칭)은 삼호3차아파트 주택을 매입하여 방배본동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서초구립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심경석)**

#### **1) 동의안 제출 개요**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6,226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274개소로 전체의 20.5%를 차지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방배본동 보육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삼호3차아파트 단지 내 주택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2)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 본 동의안은 ‘서초구립 삼호3차아파트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으로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됨.
-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따라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운영위탁)에 따라 구청장은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위탁체 선정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을 하고 보육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함.
-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별표 8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였으며,
- 위탁업무 내용은 통상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사항으로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3)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보육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정책의 합리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신반포아크로빛, 신반포자이,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어린이집은 재건축 단지 내 설치하는 의무어린이집인데 현재 사전위탁을 실시한 것으로 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동의 절차에 위배된 것.

답> 구의회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을 진행하여 함이 원칙임. 이에 먼저 양해를 구함. 위 3단지는 재건축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조합측에서 민간 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신반포아크로빛(2018.4.12), 신반포자이(2018.4.17), 반포래미안아이파크(2018.5.21) 국공립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 상정하여 국시비 지원이 결정된 것임. 8대의회 구성 후 민간위탁 동의시 위탁체 선정이 지연되어 금년 개원일정을 맞추기 어렵게 되어 불가피했음을 다시 한번 양해바람.

질> 시설별 소요예산을 보면 규모가 상이함에도 총사업비가 동일한 사유는?

답> 재건축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투자비용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서울시 지원기준이 적용되는데, 정원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됨.

##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안 사양 : 없음**

**10. 세계자구정리내용 : 없음**